

행정기획위원회
소관

성북구 노동권익센터
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



성 북 구
(일자리정책과)

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

의안 번호	5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11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‘성북구 노동권익센터’의 위탁기간이 만료됨(2025.12.31.)에 따라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민간 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,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선정위원회 구성 · 운영)에 의거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m^2)	개관일	비고(現 위탁기관)
성북구 노동권익센터	성북구 화랑로 211, 206호 (장위동)	36.3 m^2	2016.7.	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(위탁기간 2023.1. ~ 2025.12.)

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 (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)

다. 위탁방법 :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· 의결에 따른 재계약

라. 위탁사무의 범위

- (권익보호와 법률지원) 노동관계 전문 상담체계 구축
- (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)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등
- (교육훈련과 시민홍보) 구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
- (기타사업) 센터홍보,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
-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5)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